

생명안전기본법안 심 사 보 고 서

2026. 5.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3. 10. 박주민·용혜인·한창민의원 등 77인

나. 회부일자 : 2025. 3. 11.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5.7.1.)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5.11.18.) 상정

제3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5.11.26.) 상정·축조심사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6.4.29.) 상정·축조심사·의결
(수정가결)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2026.4.29.) 상정·소위심사보고·축조심사·
찬반토론·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박주민·용혜인·한창민의원)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발생은 직접적인 인적·물적 피해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부담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재난 및 각종 사고에 관한 주요 법령만으로는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사람의 안전권을 명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며, 생명안전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과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생명안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나아정 전문위원)

1) 목적 및 기본이념(안 제1조 및 제2조)

가. 주요내용

제정안은 제정안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바탕으로 안전사고로부터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사회를 건설·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안전사고의 예방·대비·대응·복구의 과정에서 모든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차별 없이 보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함)에 ① 안전 관련 법령 등 제·개정 또는 정책 수립·시행 시 모든 사람의 실질적인 참여와 정보 접근의 차별없는 보장 의무, ② 안전사고 피해자의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 보장 의무, ③ 안전약자에게 우선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보장할 의무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검토사항

기본이념 규정은 법률을 통하여 구현하고자 하는 지향점 중 목적규정에서 표현하지 못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선언적 규정에 해당¹⁾하는데, 제정안은 국가등의 권리 보장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

1) 국회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2024) p. 242 ~ 243

본이념에 규정하고 있어 그 성격이 기본이념의 성격과는 다소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국가 등의 책무 규정은 국가 등이 수행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하여 적극적인 정책 집행을 유도하는 등 법률의 입법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규정²⁾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사람의 실질적인 참여와 정보 접근 보장 의무,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 보장 의무, 안전약자에 우선적인 특별한 보호 보장 의무 등은 그 성격상 국가 등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수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제정안의 국가 등의 책무에 관한 규정³⁾에 유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기본이념에 중복하여 명시할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2) 국회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 p. 255

3) 제정안

제6조(국가등의 책무) ① 국가등은 모든 사람의 안전권을 보장할 책무를 지고, 안전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안전 관련 법령이나 조례, 규칙을 제정·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모든 사람에게 실질적인 참여와 안전에 관한 정보에의 접근을 차별 없이 보장하여야 한다.

③ 국가등은 안전사고의 예방·대비·대응·복구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약자는 특별히 보호하여야 한다.

④ 국가등은 안전사고의 효율적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하여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등은 사업을 발주하거나 시행하는 경우 안전사고의 예방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⑥ 국가등은 안전과 관련된 계획과 지침 등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국가등은 피해자에 대한 이해 증진과 효율적 소통·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안전사고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업무에 종사하는 자, 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 제공 등 각종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 관련 수사 및 재판업무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피해자의 권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정의(안 제3조)

가. 주요내용

제정안은 제정안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인 ① 안전, ② 안전사고, ③ 피해자, ④ 안전약자에 대하여 정의 규정을 두고 있음.

나. 검토사항

먼저, 제정안은 “안전”을 안전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위험이 없는 상태로 정의하고, “안전사고”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비롯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사고로 정의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사회 건설이 제정안의 목적임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안전사고”의 정의와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재난 및 사고까지 포함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폭넓게 보호하려는 취지는 이해하나, 집행적 조항과 연결되므로 안전사고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다음으로, 제정안은 피해자의 범위를 ① 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및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 ② 안전사고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③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및 그에 준하는 관계가 있는 사람, ④ 안전사고의 구조·수습·지원 활동으로 사망하거나 신체적·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⑤ 안전사고의 목격자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⑥ 그 밖에 안전사고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제정안에 따라 안전 보호 및 정책 지원을 보장받는 대상의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피해자로 인정되는 가족, 친족의 범위 중 “그에 준하는 관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가 불명확하여 해석 여하에 따라 피해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될 우려가 있고, “목격자”에 대해서도 목격의 대상을 “안전사고”로만 규정하고 있어 사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목격한 현상의 정도와 무관하게 모두 본인의 피해자성을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바, 다양한 피해자의 유형을 보다 명확히 정의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마지막으로, 제정안은 “안전약자”를 ① 장애인, ② 노인, ③ 아동, ④ 임산부, ⑤ 환자, ⑥ 노숙인 등, ⑦ 저소득층, ⑧ 다문화가족, ⑨ 이주민, ⑩ 한국어 사용이 원활치 아니한 사람, ⑪ 공간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고립되어 있어 안전사고에 취약한 사람, ⑫ 그 밖에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에 취약한 사람 등 신체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인 이유 등으로 안전사고에 취약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안전취약계층”을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으로 규정⁴⁾하여 제정안의 “안전약자”와 그 의미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안전취약계층”의 정의와는 별도로 “안전약자”를 규정할 필요성 및 그 범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피해자” 및 “안전약자”에 대한 정의와 관련하여, 보호 범위를 확대하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제정안에는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개별법에 범위를 구체화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3) 안전권 및 피해자의 권리(안 제4조 및 제5조)

가. 주요내용

제정안은 모든 사람이 성별·종교·국적·인종·세대·지역·사회적 신분·경제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일상생활과 노동현장 등에서 안전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 권리인 “안전권”을 규정하고, 피해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구조를 받을 권리, 피해 예방 등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및 인도적인 처우를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의3.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나. 검토사항

먼저, 법률 제정을 통한 “안전권”의 도입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대한민국헌법」은 국민의 안전과 관련하여,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간접적으로 규정⁵⁾하고 있으나, 국민이 안전을 누릴 권리 즉 안전권에 대하여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에 제정안은 국민의 “안전권”을 법률적 차원에서 도입하려는 것임.

제정안이 “안전권”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목적은 단순히 국민의 안전 관리를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안전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모든 사람이 기본권적 차원에서 안전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평등권, 재산권, 선거권 등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정안의 입법과 관련하여서는 “안전권”의 내용이 법률에 규정하기 이전에 헌법에 우선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이와 유사한 예로 “문화권”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대한민국헌법」은

5) 「대한민국헌법」 제34조 ①~⑤(생략)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평등권의 내용으로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⁶⁾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하여 「문화기본법」은 “문화권”의 정의를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로 구체화하며, 모든 국민이 “문화권”을 가짐을 명시하고 있음⁷⁾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제정안은 피해자의 권리 중 안전사고의 예방·대비·대응·복구 과정에서 각 호를 포함하는 인도적인 처우를 받을 권리를 규정하면서 각 호의 권리를 차별받지 아니하고 혐오로부터 보호받으며 필요한 조력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등 16개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인도적인 처우를 받을 권리와 관련한 세부권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상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일부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제정안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를 받을 권리’와

6) 「대한민국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7) 「문화기본법」 제4조(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하 “문화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이 이미 정보주체의 권리⁸⁾ 등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고,

‘생활지원·의료지원·심리치료지원·치유휴직 및 재취업지원·고용유지지원·이동지원·주거지원·법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피해자 지원에 관한 규정⁹⁾과, ‘사고원인과 국가등에 의한 안전사고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고 그 조사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포함하는 진실에 대한 권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원인조사¹⁰⁾에 관한 규정과 그

8)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송을 요구할 권리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6. 완전히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결정을 거부하거나 그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권리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 자금의 융자,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 5의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7.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產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8.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9. 그 밖에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9조(재난원인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발생 원인과 재난 발생 시 대응과정에 관한 조사·분석·평가(제34조의5제1항

내용이 중복·상충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안전권”과 관련하여 ‘모든 사람’이 안전권을 가진다고 규정하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헌법과 다른 기본법에서 ‘모든 국민’으로 권리 주체를 전제하고 있는 점¹¹⁾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고, “피해자의 권리”와 관련하여 인도적인 처우를 받을 권리를 세분화하여 규정하는 것은 다른 법률과의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 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의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이하 “재난원인조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거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의 경우에는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 및 전문기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이하 “재난원인조사단”이라 한다)을 편성하고, 이를 현지에 파견하여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경제적으로 광범위한 재난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
 2. 제1호에 따른 재난에 준하는 재난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체계적인 재난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 ③ 재난원인조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원인조사 결과를 조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원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소속직원의 파견(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요청의 경우로 한정한다), 관계 서류의 열람 및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재난원인조사 결과 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거나 개선권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권고 등에 따른 조치계획과 조치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원인조사단의 재난원인조사 결과를 신속히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보고하여야 한다.
- ⑦ 재난원인조사단의 권한, 편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1) 「문화기본법」 제4조(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하 “문화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4) 국가 등의 책무, 기업 및 단체 등의 책무(안 제6조 및 제7조)

가. 주요내용

제정안은 국가등의 책무로 안전권 보장, 모든 사람에게 실질적인 참여와 정보 접근권 보장, 안전약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의무, 통합적 관리 체계 수립 및 상호 협력 의무, 사업 시행 시 안전사고 예방 최우선 고려 의무, 안전에 관한 정보를 누구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 피해자의 권리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실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고,

기업 및 단체 등에게 안전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에 필요한 조치 및 국가등의 정책에 협력 의무, 안전사고 원인 제공 시 피해자의 권리 보장 및 안전약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의무, 사고 현장 훼손 및 조사 방해 금지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나. 검토사항

제정안은 국민의 안전권 증진을 위한 국가등의 책무와 기업 및 단체 등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기업 및 단체 등의 책무와 관련하여, 제정안은 적용 대상을 단순히 “기업”과 “단체”로만 규정하고 있어 안전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영세·소규모의 기업 및 단체 등이 모두 포함될 우려가 있으므로, 책무를 부담하는 기업 및 단체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먼저 “기업”에 대해서는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등이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는 대상 기업을 ‘영리를 목적으로 「상법」 제172조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기업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으로 정의¹²⁾하고 있는 것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단체”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의 일정한 조직체 또는 여러사람이 모여서 이루어진 집단¹³⁾을 의미하여 그 범위가 매우 넓은데, 제정안과 같이 법률상 책무를 모든 단체에 적용할 경우 과도한 부담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률상 책무를 부담하는 단체의 범위를 하위 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피해자 권리 등에 관한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그 실시 책무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규정하되, 세부적인 대상자의 범위 등은 하위 법령에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기업 및 단체 등의 책무 규정”과 관련하여 현행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이 기업의 재난관리를 자율적으로 추진할

12)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상법」 제172조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기업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이 재난으로부터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3) 표준국어대사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5)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8조)

가. 주요내용

제정안은 안전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의 제·개정 시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되도록 하려는 것임.

나. 검토사항

제정안은 “안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정안이 일반법적 성격으로서 다른 법령에 대해 상위법의 지위를 갖는다는 것을 명시하려는 것임.

다만,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¹⁴⁾이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어느 법률이 상위법적 성격을 갖는지 모호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법률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정안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정안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1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보임.

6) 생명안전정책위원회(안 제9조)

가. 주요내용

제정안은 안전권을 증진하기 위한 주요 안전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생명안전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검토사항

제정안은 생명안전종합계획, 주요 안전정책의 추진실적 점검, 피해자의 권리 보장, 안전약자의 보호 및 안전사고 관리체계에 관한 제도의 평가·개선, 안전예산의 배분·조정, 관계기관 간 조정·협력 등 안전권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생명안전정책위원회를 두려는 것임.

그런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예산 요구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재난 및 사고 예방사업 추진 등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어 두 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이 상당 부분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생명안전정책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안전에 관한

사항의 효율적인 심의·조정을 위해 기존의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활용하거나 두 위원회가 소관하는 심의·조정 사항을 조정하는 등의 방안을 함께 검토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7) 생명안전종합계획의 수립, 안전 재정 및 인력 확보 의무 등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가. 주요내용

제정안은 정부가 안전권 증진을 위해 5년마다 국가 차원의 안전권 보장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생명안전종합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도록 하고, 생명안전종합계획이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기본이 되도록 하며, 국가등이 안전 관련 사업의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추진을 위해 요구되는 인력 및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나. 검토사항

제정안은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생명안전종합계획에 안전권의 보장, 안전사고의 효율적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한 관리체계,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피해지원에 관한 관계기관의 협업 및 교육·훈련, 안전약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안전 분야 전문인력 양성, 안전사고에 대한 독립 조사, 기억과 추모 및 공동체 회복 등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고, 생명안전종합계획이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안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되도록 명시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명안전종합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안전권 증진 정책 추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임.

그런데, 2025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 재난 및 안전관리 현황 및 여건 변화와 전망,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법령·제도의 마련,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에 필요한 기반 조성 등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규정¹⁵⁾하고

- 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2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무총리는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국무총리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5년마다 그 소관에 속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안을 작성한 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고, 국무총리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확정한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중 그 소관 사항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⑦ 국무총리는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되는 사항을 소관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변경안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⑧ 제7항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 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제23조의 집행계획, 제24조의 시·도안전관리계획 및 제25조의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은 「민방위기본법」 제10조에 따른 민방위 계획 중 재난관리분야의 계획으로 본다.

제22조의2(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내용)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

있어, 제정안의 생명안전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과 상당 부분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제정안에 대하여는 현행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통합·보완하여 하나의 기본계획을 운영하는 방안 또는 두 기본계획 간의 중복되는 사항을 조정하는 방안 등 계획의 중복 수립으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의 중복 방지를 위하여 안전권 보장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8) 안전관련기준의 통합적 관리, 안전 수준 진단 및 취약성 분석, 안전영향 분석·평가(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가. 주요내용

제정안은 국가등이 모든 사람의 생명·신체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기준을 설정·공표·평가하도록 하고, 안전관리 역량의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안전수준 진단 및 취약성에 대한 실태조사·분석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법령의 제·개정 및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이 안전에 미치는

-
2. 재난 및 안전관리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3.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법령·제도의 마련 등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확립에 관한 사항
 4.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에 필요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안전영향분석평가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나. 검토사항

제정안은 국가 등이 국제적인 기준 등을 고려한 안전관련기준의 설정·공표·평가하도록 하고, 국가 차원의 안전정책의 환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취약성에 대한 실태조사·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법령의 제·개정 및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한 안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안전과 관련된 정책의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의 통합적인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가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안전기준”을 각종 시설 및 물질 등의 제작,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으로 정의하면서, 안전기준의 분야 및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¹⁶⁾, 행정안전부장관이 안전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안전기준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한편, 안전기준의 등록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¹⁷⁾.

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의2. “안전기준”이란 각종 시설 및 물질 등의 제작,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을 말하며, 안전기준의 분야,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7(안전기준의 등록 및 심의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안전기준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기준을 신설 또는 변경하는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수(이하 “안전지수”라 함)을 개발·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지수를 고려하여 안전수준 및 안전의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안전환경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등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¹⁸⁾하고 있음.

이와 같이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규정과 제정안의 안전관련기준, 안전수준 진단 및 취약성 분석에 관한 규정의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안전관리를 위한 일원화된 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하나의 법률에서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안전관련기준의 설정·공표 주체 및 평가방법의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안전기준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안전기준의 등록을 요청받은 때에는 안전기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설 또는 변경하는 안전기준은 제34조의3에 따른 국가재난관리기준에 어긋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안전기준의 등록 방법 및 절차와 안전기준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0(안전지수의 공표 및 안전진단의 실시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수(이하 “안전지수”라 한다)를 개발·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표된 안전지수를 고려하여 안전수준 및 안전의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안전환경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등 안전진단(이하 “안전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지수의 조사 및 안전진단의 실시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지수의 개발·조사 및 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안전지수의 조사 항목, 방법, 공표절차 및 안전진단의 실시 방법, 절차,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체화·명확화를 위한 위임근거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9)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지원(안 제16조)

가. 주요내용

제정안은 국가등이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고, 이 법에서 정하는 지원을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없이 시행하도록 하며, 피해자 및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 수립·시행 및 배·보상 시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구제절차와 피해 입증을 위한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나. 검토사항

제정안은 국가등이 피해자에 대한 지원 시 지켜야 하는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제정안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등의 책무’에 관한 규정에서 국가등이 모든 사람의 안전권 보장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의무,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시행 시 실질적인 참여와 정보에의 차별없는 접근 보장 의무, 안전사고의 예방·대비·대응·복구의 모든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 보장 의무, 안전과 관련된 계획과 지침 등 안전에 관한 정보의 적극적인 공개 및 편리한 이용 보장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제정안이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지원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등의 의무와 대부분 유사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유사한 사항을 두 개의 조문에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복구지원 체계는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에 한정하고, 1차 산업 외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는 개별보험 등을 통한 자기 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이 국가 등에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의 회복 조치를 시행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국가등의 배·보상은 「자연재해대책법」(손실보상), 「민법」(사법상 손해배상), 「국가배상법」(행정상 손해배상) 등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제정안에 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10) 안전사고에 관한 정보의 제공·공개 및 안전사고에 대한 독립적 조사(안 제17조 및 제18조)

가. 주요내용

제정안은 피해자가 국가등 또는 관련 기업·단체 등에 안전사고와 관련된 조사결과와 법원의 판결서 등 안전사고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등은 안전사고의 원인과 수습

및 대응 과정의 적절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사고조사를 위한 독립조사기구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나. 검토사항

제정안은 피해자가 피해를 유발한 안전사고와 관련한 정보에 최대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먼저, 안전사고에 관한 정보의 제공·공개와 관련하여,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정보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공개하기 위한 안전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행정안전부는 ‘안전모아 진단모아-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해 건축물, 승강기, 어린이놀이시설 등의 시설물 안전점검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또한, 제정안과 같이 안전사고 관련 감사원 등의 조사 결과와 법원의 판결서, 안전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국가등·기업 및 단체의 안전사고원인·재발방지대책·피해지원과 회복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

물질 취급 및 노출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면 안전 사고에 관한 피해자의 알권리 증진에 도움이 되는 측면은 있겠으나,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비공개 대상 정보¹⁹⁾를 고려할 때, 감사원 등의 조사 결과와 법원의 판결서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기업의 영업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의 경우에는 정보공개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권리보장 목적에서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한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사례²⁰⁾를 참조할 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20)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의2(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① 국가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범죄피해자의 해당 재판절차 참여 진술권 등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

2.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체 현황 등 범죄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정보

과의 충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에 관한 정보를 중심으로 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다음으로,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 및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지정하여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²¹⁾, 각 재난관리 주관기관은 주관하는 유형의 재난 및 사고에 관하여 각 부처의 소관 법령에 따라 전문성을 가지고 자체조사 등을 수행하고 있음.

대표적으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은 항공·철도사고의 원인규명과 예방을 위한 사고조사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²²⁾를 두고 있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은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혀 해양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안전심판원을 두고 조사 및 심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²³⁾.

3.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2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22)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 등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하여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함으로써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 등의 예방과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①항공·철도사고등의 원인규명과 예방을 위한 사고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적인 행정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를 지휘·감독하되, 사고조사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못한다.

23)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을 통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힘으로써 해양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심판원의 설치) 해양사고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안전심판

재난 및 사고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여 단일한 조사기구에서 전문성을 갖고 조사를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제정안과 같이 안전사고에 관한 독립조사기구의 상설화 규정을 두기보다는 현행과 같이 각 재난의 유형별로 조사기구를 설치하여 추진하는 방안이 조사의 전문성·효과성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며, 제정안에서는 안전사고에 대한 조사 실시에 관한 일반원칙만을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고용노동부는 안전사고 관련 정보의 제공·공개와 관련하여, 중대재해에 관한 원인조사의 경우 수사의 일환으로 진행되어 의견서에 피의사실 및 기업의 영업상 비밀이 다수 포함됨에 따라 「형법」상 피의사실공표²⁴⁾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²⁵⁾과

원(이하 “심판원”이라 한다)을 둔다.

제4조(해양사고의 원인규명 등) ① 심판원이 심판을 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혀야 한다.

1. 사람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
2. 선박승무원의 인원, 자격, 기능, 근로조건 또는 복무에 관한 사유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
3. 선박의 선체 또는 기관의 구조·재질·공작이나 선박의 의장(艤裝) 또는 성능에 관한 사유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
4. 수로도지(水路圖誌)·항로표지·선박통신·기상통보 또는 구난시설 등의 항해보조시설에 관한 사유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
5. 항만이나 수로의 상황에 관한 사유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
6. 화물의 특성이나 적재에 관한 사유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

② 심판원은 제1항에 따른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힐 때 해양사고의 발생에 2명 이상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관련자에 대하여 원인의 제공 정도를 밝힐 수 있다.

③ 심판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해양사고의 원인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24)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公表)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2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충돌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또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는 안전사고에 관한 정보제공·공개, 독립사고조사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은 개별법령에 이미 규정되어 있어 제정안에 별도로 규정할 경우 중복 문제 발생 및 조사의 전문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11) 기억과 추모 및 공동체 회복(안 제19조 및 제20조)

가. 주요내용

제정안은 국가등은 안전사고의 기억과 추모, 안전사고로 영향을 받은 지역사회의 공동체 회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모공원·기념관 등의 건립·조성, 현장 보존·관리, 기념일 지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기억과 추모 또는 공동체 회복에 관한 사업을 재단 등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위탁한 재단 등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나. 검토사항

제정안이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와 희생을 국민이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안전사고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지역사회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공동체의 회복을 지원하려는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은 기억과 추모의 대상이 되는 안전사고의 범위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그 범위가 다소 광범위하고 불명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제정안은 기억과 추모 및 공동체 회복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은 재단 등 단체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반드시 출연 또는 보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위탁받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출연 또는 보조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임의규정으로 규정하여 출연·보조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출연 또는 보조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추모사업이나 공동체 회복의 대상이 되는 안전사고의 범위를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은 관계부처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12) 안전약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및 지원체계의 확립 등(안 제21조 및 제22조)

가. 주요내용

제정안은 제21조(안전약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에서 국가등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약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피계획과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제22조(지원체계의 확립 등)에서 국가등은 안전약자와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며, 안전약자와 피해자 지원을 전담하는 전문인력의 양성·확보 및 전담 기구의 설치 등 지원체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검토사항

제정안이 안전사고로부터 취약한 안전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안전약자 및 피해자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 제21조는 안전약자의 특성을 고려한 대피계획과 지원 대책의 수립·시행을, 제정안 제22조제1항은 안전약자와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의 수립·추진을 규정하고 있어 같은 내용을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두 조문을 통합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개별 법률²⁶⁾에서 안전약자 지원을 위한 전문

2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재난관리자원의 관리)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재산 및 인력 등의 물적·인적자원(이하 “재난관리자원”이라 한다)을 비축하거나 지정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심리지원”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2.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구조, 복구, 치료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② 국가트라우마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6. 심리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인력을 양성하고 있고, 관련 지원을 전담하는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은 관계부처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안전약자를 위한 시책 수립·추진에 관한 내용은 제정안 제21조와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13) 피해자 정보 누설의 금지 및 벌칙(안 제23조 및 제24조)

가. 주요내용

제정안은 피해자 및 안전약자에 대한 지원, 안전사고 관련 정보의 공개 등 관련 업무에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의 목적 외 용도 제공 및 누설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나. 검토사항

최근 인터넷 시대의 발달로 정보의 공유가 보다 신속하고 자유롭게 이뤄짐에 따라 재난 발생 시 피해자의 민감한 정보가 유출되어 추가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제정안은 「형법」의 규정과는 별도로 피해자 관련 정보의 목적 외 제공 및 누설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나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피해자

보호 필요성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생각됨.

다만, 안전사고에 관한 피해자의 정보는 1차적으로 관련 재난 또는 사고의 대응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알게 될 가능성이 높는데, 현행 「형법」은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범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벌금형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는바²⁷⁾,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을 적용할 경우 오히려 「형법」의 규정을 적용할 때보다 경하게 처벌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제정안이 「형법」상 모욕죄²⁸⁾와는 별도로 피해자에 대한 모욕죄를 규정하고 더 중한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제정안은 직무상 비밀누설 또는 모욕행위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형법」에 따른 보호보다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므로, 제정안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27)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28)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 제2소위원장 서범수)

제정안의 내용 중 기본이념의 각 항 중 국가등의 책무와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하고, 안전사고, 피해자의 정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전약자의 유형을 다른 법률을 인용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대한민국헌법」 및 권리 조항을 두고 있는 유사 기본법 사례를 참조하여 안전권의 주체를 모든 국민으로 수정하며, 대한민국 영역에 있는 외국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별도 항을 신설하고, 피해자의 권리 중 불명확한 문구를 사용한 부분을 일부를 삭제하거나 자구를 수정하며, 기업 등의 책무와 관련하여 책무의 부담 주체를 기업 및 단체 등에서 기업 등으로 수정하여 책무 부담의 범위가 불분명한 ‘단체’를 삭제하고, 생명안전 정책위원회의 명칭을 국민생명안전위원회로 하고 심의 및 구성과 관련된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생명안전종합계획의 수립 절차에서 대통령의 승인을 삭제하고, 다른 법률의 계획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생명안전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생명안전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 10에 근거한 안전지수의 공표와 관련된 내용을 이 법에서 규율하기

위해 반영하고, 안전지수의 개발·조사 및 안전수준 진단 및 취약성 분석을 위한 자료요청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전영향 분석·평가의 주체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 수정하고, 대상·방법·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독립조사기구를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로 구체화하여, 사고조사의 대상, 조사업무 수행의 방법, 정책개선 권고 등을 규정하고(안 제18조),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별도의 조로 신설하고, 기억과 추모의 대상을 안전사고 및 피해자로 구체화하고, 추모사업의 범위를 일부 조정하였으며, 추모사업을 위탁받은 비영리기관·단체에 대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을 공동체사업으로 규정하고, 그 사업의 범위를 신설하였으며, 공동체사업을 위탁받은 비영리기관·단체에 대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벌칙 조항을 고려하여 누설 금지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를 피해자와 안전약자에 관한 정보에서 피해자에 관한 정보로 수정하고, 해당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칙의 시행일 중 제10조(생명안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3조(안전관련기준의 통합적 관리), 제14조(안전지수의 공표·안전수준 진단 및 취약성 분석), 제15조(안전영향 분석·평가), 제18조(안전사고의 발생원인 등에 대한 조사 등), 제19조(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서는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이 법 시행 이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일부 조문을 삭제하는 다른 법률의 개정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조정하여 수정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없 음

9. 관련위원회 의견 요지

없 음

10.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붙임] 1. 생명안전기본법안에 대한 수정안

2. 생명안전기본법안

생명안전기본법안에 대한 수정안

생명안전기본법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사람”을 각각 “국민”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를 “국가에”로, “안전영향평가제도”를 “안전영향 분석·평가제도”로 한다.

안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안 제3조제2호 중 “재난을 비롯하여”를 “재난 등”으로, “사고를”을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안전사고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말한다”를 “말한다. 다만, 안전사고를 목격한 피해자의 경우에는 안전사고를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호 각 목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람으로”를 “사람으로서”로 하고, 같은 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국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 이라 한다)”로 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나. 65세 이상의 노인

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

라.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숙인 등

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사. 그 밖에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에 취약한 사람

안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사람”을 “국민”으로, “종교·국적”을 “종교”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등은 안전권을 보장하는데 있어 대한민국의 영역에 있는 외국인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 제5조제3항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8호(중전의 제10호) 중 “사고원인과”를 “사고원인 및”으로, “참여할 권리를 포함하는 진실에 대한”을 “참여를 요구할”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한다.

안 제6조제1항 중 “사람”을 “국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령이나 조례, 규칙”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사람에게”를 “국민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과정에서”를 “과정에서 피해자의 조사 요구 및 조사과정에서의 참여 요구에 성실히 응하는 등”으로, 같은 조 제7항 중 “안전사고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업무에 종사하는 자, 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 제공 등 각종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 관련 수사 및 재판업무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과 관계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피해자의”를 “피해자의”로, “한다”를 “하며, 교육·훈련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안 제7조의 제목 중 “기업 및 단체”를 “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업 및 단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등(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으로, “할 책무를 진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기업 및 단체 등”을 각각 “기업등”으로 한다.

안 제8조의 제목 중 “법률”을 “법령”으로 한다.

안 제9조의 제목 “(생명안전정책위원회)”를 “(국민생명안전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증진하기 위한 주요 안전정책”을 “증진하고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건설·확립하기 위한 생명안전 관련 주요 정책”으로, “심의·조정”을 “심의”로, “생명안전정책위원회”를 “국민생명안전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조정한다”를 “심의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0조”를 “생명존중 안전사회 건설·확립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 및 제10조”로, “생명안전종합계획”을 “생명안전종합계획의 수립·변경”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주요 안전정책의 추진실적”을 “산업재해, 자연재난, 교통안전, 어린이 안전대책 및 그 밖의 생명안전 관련 주요 정책의 추진상황”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안전예산의 배분·조정 내역”을 “생명존중 안전사회 관련 예산의 투자 방향”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증진”을 “증진과 생명존중 안전사회 건설·확립”으로, “위원장”을 “인정하여 생명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이 생명안전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30명”을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4항) 중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을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위촉위원”으로, “호선으로 선정된 사람”을 “대통령이 지명하는 1명”으로, “한다”를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5항) 중 “생명안전위원회”를 “그 밖에 생명안전위원회”로, “운영”을 “운영 등”으로,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7. 생명존중 안전사회 관련 교육 및 홍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④ 생명안전위원회의 위원은 생명안전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안 제10조제1항 중 “이하 이 조에서”를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를 “거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제2호 중 “안전정책”을 “생명안전 관련 주요 정책”으로, 같은 항 제7호 중 “안전”을 “생명안전”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생명안전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별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생명안전종합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안 제13조의 제목 중 “통합적 관리”를 “설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그리고 재산”을 “및 재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안전관련기준의”를 “국가등은 안전관련기준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안전관련기준의 분야·범위·평가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14조의 제목 중 “안전수준”을 “안전지수의 공표·안전수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가등은 생명안전종합계획의 수립 및 전반적인 안전정책의 환류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 관리”를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관리”로, “안전수준 진단 및 취약성에 대한 실태조사·분석을 할”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수(이하 이 조에서 “안전지수”라 한다)를 개발·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안전수준”

을 “안전지수의 조사 항목·방법·공표절차, 제2항에 따른 안전수준”으로, “취약성 분석”을 “취약성에 대한 실태조사·분석”으로, “실시 시기, 내용 및 사후관리 등”을 “실시 시기·내용·사후관리, 제3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 등에 관한”으로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표된 안전지수를 고려하여 시·도별 및 시·군·구별로 안전수준 진단 및 취약성에 대한 실태조사·분석을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지수의 개발·조사, 제2항에 따른 안전수준 진단 및 취약성에 대한 실태조사·분석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안 제15조제1항 중 “국가등은”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안전영향분석평가”를 “안전영향 분석·평가”로, “법률로”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② 제1항의 안전영향 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사업이 다른 법률에 따라 안전 관련 사전협의 또는 영향평가를 거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안전영향 분석·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안 제16조제3항 중 “피해 지역”을 “안전사고가 발생한 피해지역(이하 “피해지역”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배·보상”을 “배상

· 보상”으로, “반영하여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로 한다.

안 제17조의 제목 중 “제공·공개”를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기업·단체 등”을 “기업등”으로, “포함한”을 “포함한 피해자와 관련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기업 및 단체 등”을 “기업등”으로 한다.

안 제18조의 제목 중 “조사”를 “조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가등은”을 “국가는”으로, “원인”을 “발생 원인”으로, “및 대응 과정의 적절성”을 “과정의 적정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는 안전사고의 발생 원인과 수습 과정의 적정성을 규명하고, 정책개선 권고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의 업무(이하 “조사업무”라 한다)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사고조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조사위원회의 조사 기간은 안전사고의 규모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되 신속하게 실시한다.

1.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거나 안전사고의 영향이 사회적

· 경제적으로 광범위한 안전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

2.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여 조사를 요구하는 안전사고. 이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 대상으로 정하는 안전사고. 다만, 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가 개별 법령에 따른 조사기구에서 진행 중인 안전사고는 제외한다.

④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3항에 따른 사고조사
2. 조사보고서의 작성·의결
3. 제7항에 따른 조치결과 점검 및 확인에 관한 사항
4. 사고조사에 필요한 조사·연구
5. 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이를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
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조사대상자, 참고인 및 그 밖의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하여 조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

구 및 제출된 자료 또는 물건의 보관

4.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한 사실조회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6. 조사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실지조사

7. 조사대상인 사고조사에 관하여 다른 조사기구의 조사기록, 재판 기록 및 그밖의 기록의 열람, 등사, 사본의 제출요구 등을 통한 조사

⑥ 국가등은 조사위원회가 발표하는 조사결과 및 정책개선 권고 사항을 존중하고 이행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책개선 권고 사항에 따른 조치계획과 이행방안을 조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조사위원회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하여 그 조치결과를 점검·확인할 수 있다.

안 제19조부터 제24조를 각각 제20조부터 제25조로 하고,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상임위원은 3명 이내로 한다.

② 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비상임위원은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대학에서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재해·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관련 분야 또는 긴급구조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사고조사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인권 관련 단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7. 수사·정보수집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 ③ 조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④ 조사위원회의 위원은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한다.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3. 정당의 당원

⑥ 조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⑦ 조사위원회는 제18조제3항의 사고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⑧ 조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에 지원조직을 둔다.

⑨ 그 밖에 조사위원회, 조사단 및 지원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20조(중전의 제19조)제1항 중 “안전사고의 기억과 추모에”를 “피해자 및 안전사고를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정되는”을 “인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조형물·상징물·봉안시설 등을 포함한”을 “추모비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관련”을 “기억과 추모를 위한 관련”으로, “활용을 통한 전시·출판·연구·학술 및 문화사업 및 국제협력사업”을 “관리·전시 및 조사·연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업의 원활한”을 “사업(이하 이 조에서 “추모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으로, “위하여 사업의”를 “위하여 추모사업의”로, “기억”을 “피해자 및 안전사고에 대한 기억”으로, “재단 등”을 “비영리 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에 따른 사업을”을 “추모사업을”로, “유가족을 비롯한 안전사고”를 “추

모사업의 효율적 추진과”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한 위원회 구성 등”을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의 재단 등”을 “제3항에 따라 추모사업을 위탁한 비영리 기관·”으로, “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에”를 “추모사업의 수행에”로, “비용을 출연”을 “비용의 전부”로, “보조하여야 한다”를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에”를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추모사업에”로, “지원조직의 설치 등 구체적인 사항은”을 “사항은”으로 한다.

3. 기억과 추모를 위한 관련 자료 및 기념사업에 관한 홍보·교육과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배포

4. 안전사고 예방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운영

안 제21조(종전의 제20조)제1항 중 “지역사회·공동체의”를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로, “안정·동질성 유지·정신 및 신뢰의 회복·재난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갈등의 조정 등을”을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을 “제2항에 따른 사업(이하 이 조에서 “공동체사업”이라 한다)”으로, “사업의 전부”를 “공동체사업의 전부”로, “관련 공동체”를 “공동체”로, “재단 등”을 “비영리 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 따른 사업을”을 “공동체사업을”로, “유가족을 비롯한 안전사고”를 “공동체사업

의 효율적 추진과”로,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한 위원회 구성 등”을 “및 피해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2항에 따른 재단 등”을 “제3항에 따라 공동체사업을 위탁한 비영리 기관·”으로, “사업 수행에”를 “공동체사업의 수행에”로, “비용을 출연”을 “비용의 전부”로, “보조하여야 한다”를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에”를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체사업에”로, “지원조직의 설치 등 구체적인 사항은”을 “사항은”으로 한다.

② 국가등은 제1항에 따른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및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시행
2. 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
3. 그 밖에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안 제22조(중전의 제21조) 중 “대피계획”을 “관계 법령에 따라 대피계획”으로 한다.

안 제23조(중전의 제22조)제1항 중 “안전약자와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피해자와 안전약자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요건”을 “어느 하나의 요건”으로, “안전약자와 피해자”를 “피해자와 안전약자”로

하며, 같은 항 각 호의 “안전약자와 피해자”를 각각 “피해자와 안전약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설치할”을 “운영할”로 한다.

안 제24조(중전의 제23조) 중 “피해자 및 안전약자”를 각각 “피해자”로 한다.

안 제25조(중전의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을 “제24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으로,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를 삭제한다.

안 부칙 본문을 삭제하고, 제1조부터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11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8조 및 제19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사고조사는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안전사고부터 실시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안전에 관한 모든 <u>사람의</u>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안전사고에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 안전사고 피해자의 권리 등을 규정함과 아울러 안전사고의 발생 원인 및 <u>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u> 의한 안전사고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의 보장, <u>안전영향평가제도</u> 등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로부터 모든 <u>사람이</u> 자신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사회를 건설·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국민</u> ----- ----- ----- ----- ----- ----- <u>국가에</u> ----- ----- ----- <u>안전영향 분석</u> · <u>평가제도</u> ----- ----- <u>국민</u> ----- ----- ----- -----.
제2조(기본이념) ① (생 략) ②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안전 관련 법령, 조례, 규칙을 제정·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모든 사람의 실질적인 참여와 안전에 관한 정보에 대</u>	제2조(기본이념) (원안과 같음) <u><삭 제></u>

한 접근을 차별 없이 보장하여
야 한다.

③ 국가등은 안전사고 피해자
의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
를 보장하여야 한다.

④ 국가등은 안전약자에게 우
선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보장
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생 략)

2. “안전사고”란 「재난 및 안
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재난을 비롯하여 사
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사
고를 말한다.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
----말한다.

<삭 제>

<삭 제>

제3조(정의) -----
-----.

1. (원안과 같음)

2. -----

-----재난 등-----
-----사
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

3. -----안전사고로 인
하여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
----말한다. 다만, 안전사고
를 목격한 피해자의 경우에는
안전사고를 현장에서 직접 목
격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가. <u>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및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u>	<u><삭 제></u>
나. <u>안전사고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u>	<u><삭 제></u>
다. <u>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및 그에 준하는 관계가 있는 사람</u>	<u><삭 제></u>
라. <u>안전사고의 구조·수습·지원 활동으로 사망하거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u>	<u><삭 제></u>
마. <u>안전사고의 목격자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u>	<u><삭 제></u>
바. <u>그 밖에 안전사고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사람</u>	<u><삭 제></u>
4. “안전약자”란 신체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인 이유 등으로 안전사고에 취약한 <u>사람으로</u>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	4. ----- ----- ----- <u>사</u> <u>람으로서</u> ----- -----

다. <u>가. 장애인</u> <u>나. 노인</u> <u>다. 아동</u> <u>라. 임산부</u> <u>마. 환자</u> <u>바. 노숙인 등</u> <u>사. 저소득층</u> <u>아. 다문화가족</u> <u>자. 이주민</u> <u>차. 한국어 사용이 원활치 아</u> <u>니한 사람</u> <u>카. 공간적으로나 문화적으로</u> <u>고립되어 있어 안전사고에</u> <u>취약한 사람</u> <u>타. 그 밖에 다른 법령으로</u> <u>정하는 안전사고에 취약한</u> <u>사람</u> 5. “안전관련기준”이란 사람의 안전과 안전사고 피해자의 권 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u>국가</u>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 직한 안전의 조건 또는 질적 인 수준을 말한다. 제4조(안전권) 모든 <u>사람</u>은 성별	--. <u>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u> <u>제1항에 따른 장애인</u> <u>나. 65세 이상의 노인</u> <u>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u> <u>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u> <u>어린이</u> <u>라. 「모자보건법」 제2조제1</u> <u>호에 따른 임산부</u> <u>마. 「노숙인 등의 복지 및</u> <u>자립지원에 관한 법률」</u> <u>제2조제1호에 따른 노숙인</u> <u>등</u> <u>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u> <u>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u> <u>족</u> <u>사. 그 밖에 다른 법령으로</u> <u>정하는 안전사고에 취약한</u> <u>사람</u> 5. ----- ----- -----<u>국가와</u> <u>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u> <u>이라 한다)</u>----- -----. 제4조(안전권) ① -----<u>국민</u>-----
--	--

· 종교 · 국적 · 인종 · 세대 · 지역 · 사회적 신분 · 경제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일상생활과 노동현장 등에서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생명 · 신체 및 재산을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 권리(이하 “안전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신 설>

제5조(피해자의 권리) ① . ② (생 략)

③ 피해자는 안전사고의 예방 · 대비 · 대응 · 복구 과정에서 각 호를 포함하는 인도적인 처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1. · 2. (생 략)

3. 언론 취재 및 일반인의 접근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4. (생 략)

5.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의 수색을 요구할 권리

6. ~ 9. (생 략)

----종교-----

-----.

② 국가등은 안전권을 보장하는데 있어 대한민국의 영역에 있는 외국인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피해자의 권리) ① . ② (원안과 같음)

③ -----

-----.

1. · 2. (원안과 같음)

<삭 제>

3. (원안 제4호와 같음)

<삭 제>

4. ~ 7. (원안 제6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10. <u>사고원인과 국가등에 의한</u> 안전사고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고 그 조 사 과정에 <u>참여할 권리를 포</u> <u>함하는 진실에 대한 권리</u> 11. <u>안전사고 및 그 대응과정의</u> <u>문제점에 대하여 책임있는</u> <u>주체에 대하여 처벌 등 적절</u> <u>한 제재를 요구할 수 있는</u> <u>권리</u> 12. ~ 16. (생략) 제6조(국가등의 책무) ① 국가등 은 모든 <u>사람의</u> 안전권을 보장 할 책무를 지고, 안전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안전 관련 <u>법령이</u> <u>나 조례, 규칙을</u> 제정·개정하 거나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모든 <u>사람에게</u> 실질적인 참여 와 안전에 관한 정보에의 접근 을 차별 없이 보장하여야 한다. ③ 국가등은 안전사고의 예방	8. <u>사고원인 및</u>----- ----- ----- -----<u>참여를 요구할</u>----- <삭 제> 9. ~ 13. (원안 제12호부터 제 16호까지와 같음) 제6조(국가등의 책무) ① ----- -----<u>국민</u>----- ----- ----- ----- ----- -----. ② -----<u>법령,</u> <u>조례 또는 규칙</u>----- ----- -----<u>국민에게</u>----- ----- -----. ③ 국가등은 안전사고의 예방
--	---

· 대비 · 대응 · 복구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안
전약자는 특별히 보호하여야
한다.

④ ~ ⑥ (생략)

⑦ 국가등은 피해자에 대한 이
해 증진과 효율적 소통 ·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안전사고
의 예방 · 대비 · 대응 · 복구 업
무에 종사하는 자, 피해자에 대
한 상담 · 의료 제공 등 각종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 관련
수사 및 재판업무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피해자 보호 · 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피해자의 권리 등에 관
하여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
시하여야 한다.

제7조(기업 및 단체 등의 책무)

① 기업 및 단체 등은 안전사
고의 예방 · 대비 · 대응 · 복구
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하며, 국가등의 안전 관련
정책에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 대비 · 대응 · 복구 과정에서
피해자의 조사 요구 및 조사
과정의 참여 요구에 성실히
응하는 등 피해자의 권리를 보
장하고, 안전약자는 특별히 보
호하여야 한다.

④ ~ ⑥ (원안과 같음)

⑦ -----

-----피해자의

-----하며,
교육 · 훈련 대상 등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기업 등의 책무) ①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업 등(이하
“기업등”이라 한다)-----

진다.

② 안전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기업 및 단체 등은 안전사고를 예방·대비·대응·복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약자는 특별히 보호하여야 한다.

③ 기업 및 단체 등은 안전사고 발생 및 수습현장을 훼손하거나 안전사고의 원인 및 대응의 적정성 등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안전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생명안전정책위원회) ① 안전권을 증진하기 위한 주요 안전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생명안전정책위원회(이하 “생명안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생명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한다.

② -----
기업등-----

-----.

③ 기업등-----

-----.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원안과 같음)

제9조(국민생명안전위원회) ① -----
-----증진하고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건설·확립하기 위한 생명안전 관련 주요 정책-----
-----심의-----
-----국민생명안전위원회-----

-----.

② -----

호의 사항을 <u>심의·조정한다.</u> 1. <u>제10조에 따른 생명안전종합 계획에 관한 사항</u> 2. <u>주요 안전정책의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u> 3.·4. (생략) 5. <u>안전예산의 배분·조정 내역에 관한 사항</u> 6. (생략) <u><신설></u> 7. <u>그 밖에 안전권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u> ③ <u>생명안전위원회는 위원장 2</u>	-----<u>심의한다.</u> 1. <u>생명존중 안전사회 건설·확립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 및 제10조-----생명안전종합 계획의 수립·변경-----</u> ----- 2. <u>산업재해, 자연재난, 교통안전, 어린이 안전 대책 및 그 밖의 생명안전 관련 주요 정책의 추진상황-----</u> ----- 3.·4. (원안과 같음) 5. <u>생명존중 안전사회 관련 예산의 투자 방향-----</u> 6. (원안과 같음) 7. <u>생명존중 안전사회 관련 교육 및 홍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u> 8. -----<u>증진과 생명존중 안전사회 건설·확립-----</u> -----<u>인정하여</u> <u>생명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이</u> <u>생명안전위원회의-----</u> ----- ③ -----1
---	--

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
하여 구성한다.

<신 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정된 사람이 공동으로 한다.

⑤ 생명안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생명안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안전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 차원의 안전권 보장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생명안전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④ 생명안전위원회의 위원은
생명안전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
무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 또
는 임명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위촉위원-----대통령이 지명하는 1명이-----된다.

⑦ 그 밖에 생명안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생명안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

------(이하 “생명안전종합
계획”이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생명안전종합계획안을 작성하고, 생명안전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생명안전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략)

2. 안전권 보장을 위한 안전정책의 기본 방향

3.~6. (생략)

7. 안전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8.~11. (생략)

<신 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명안

[illegible]

③ _____

_____.

1. (원안과 같음)

2. -----생명
안전 관련 주요 정책-----

3.~6. (원안과 같음)

7. 생명안전-----

8.~11. (원안과 같음)

③ 생명안전종합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생명안전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종합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하고, 그 시행계획과 전
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11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생
략)

<신 설>

제13조(안전관련기준의 통합적
관리) ① 국가등은 모든 사람
의 생명·신체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기
준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련기
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안전관련기준의 적정성 유
지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
관련기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1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원안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별 법
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과 관
련된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생명안전종합계획에 부합하도
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관련기준의 설정 등)

① -----
-----및 재산-----

-----.

② (원안과 같음)

③ 국가등은 안전관련기준의--

-----.

④ 안전관련기준의 분야·범위

제14조(안전수준 진단 및 취약성 분석) ① 국가등은 생명안전종합계획의 수립 및 전반적인 안전정책의 환류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 관리 역량의 제고를 위하여 시·도별 및 시·군·구별로 안전수준 진단 및 취약성에 대한 실태조사·분석을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 평가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안전지수의 공표·안전수준 진단 및 취약성 분석)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관리-----
-----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수(이하 이 조에서 “안전지수”라 한다)를 개발·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표된 안전지수를 고려하여 시·도별 및 시·군·구별로 안전수준 진단 및 취약성에 대한 실태조사·분석을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지수의 개발·조사, 제2항에 따른 안전수준 진단 및 취약성에 대한 실태조사·분석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수준 진단 및 취약성 분석의 실시 시기, 내용 및 사후관리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안전영향 분석·평가) ① 국가등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안전영향분석평가의 대상·

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안전지수의 조사 항목·방법·공표절차, 제2항에 따른 안전수준-----취약성에 대한 실태조사·분석---실시 시기·내용·사후관리, 제3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 등에 관한-----
-----.

제15조(안전영향 분석·평가) 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

② 제1항의 안전영향 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사업이 다른 법률에 따라 안전 관련 사전협의 또는 영향평가를 거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안전영향 분석·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안전영향 분석·평가-----

방법·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6조(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지원의 원칙) ① · ② (생략)

③ 국가등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국가등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보상 등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고, 구제절차와 피해 입증을 위한 자료 등의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사고에 관한 정보의 제공·공개)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가등 또는 관련 기업·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사고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

---대통령령으로-----.

제16조(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지원의 원칙) ① · ② (원안과 같음)

③ -----안전사고가 발생한 피해지역(이하 “피해지역”이라 한다)-----

-----.

④ -----배상·보상-----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

제17조(안전사고에 관한 정보의 제공) -----

-----기업등-----
-----포함한 피해자와 관련된-----
-----.

에 따라야 한다.

1. (생략)

2. 안전사고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국가등 또는 관련 기업 및 단체 등의 명칭·소재지·안전사고원인·재발방지대책·피해지원과 회복에 관한 사항

3. (생략)

제18조(안전사고에 대한 독립적 조사) ① 국가등은 안전사고의 원인과 수습 및 대응 과정의 적절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이하 “사고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를 위하여 독립적으로 안전사고의 발생 원인과 수습 및 대응과정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정책개선을 권고하며 권고안 이행을 점검할 수 있는 조사기구(이하 “독립조사기구”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독립조사기구는 예산 및 인

-----.

1. (원안과 같음)

2. -----
-----기업
등-----

3. (원안과 같음)

제18조(안전사고에 대한 독립적 조사 등) ① 국가는-----
발생 원인-----과정의 적정성-----

-----.

② 국가는 안전사고의 발생 원인과 수습 과정의 적정성을 규명하고, 정책개선 권고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의 업무(이하 “조사업무”라 한다)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 등에 있어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④ 국가등은 독립조사기구가 발표하는 조사결과 및 정책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사고조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조사위원회의 조사 기간은 안전사고의 규모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되 신속하게 실시한다.

1.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거나 안전사고의 영향이 사회적·경제적으로 광범위한 안전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

2.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국무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여 조사를 요구하는 안전사고. 이 경우 국무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 대상으로 정하는 안전사고. 다만, 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가 개별 법령에 따른 조사기구에서 진행 중인 안전사고는 제외한다.

④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선 권고를 존중하고 이행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독립조사기구의 조직, 구성, 조사의 대상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1. 제3항에 따른 사고조사
2. 조사보고서의 작성·의결
3. 제7항에 따른 조치결과 점검 및 확인에 관한 사항
4. 사고조사에 필요한 조사·연구
5. 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이를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
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조사대상자, 참고인 및 그 밖의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하여 조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u><신 설></u>	<u>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료 또는 물건의 보관</u> 4. <u>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한 사실조회</u>
<u><신 설></u>	5. <u>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u>
<u><신 설></u>	6. <u>조사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 소에 대한 실지조사</u>
<u><신 설></u>	7. <u>조사대상인 사고조사에 관하 여 다른 조사기구의 조사기 록, 재판기록 및 그 밖의 기 록의 열람, 등사, 사본의 제출 요구 등을 통한 조사</u>
<u><신 설></u>	⑥ <u>국가등은 조사위원회가 발 표하는 조사결과 및 정책개선 권고 사항을 존중하고 이행방 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책개선 권고 사항에 따른 조 치계획과 이행방안을 조사위원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
<u><신 설></u>	⑦ <u>조사위원회는 개선권고 사 항에 대하여 그 조치결과를 점 검·확인할 수 있다.</u>
<u><신 설></u>	<u>제19조(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 영 등) ① 조사위원회는 위원 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u>

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상임위원은 3명 이내로 한다.

② 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비상임위원은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대학에서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재해·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관련 분야 또는 긴급구조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사고조사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인권

관련 단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7. 수사·정보수집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조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조사위원회의 위원은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3. 정당의 당원

⑥ 조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제19조(기억과 추모) ① 국가등은 안전사고의 기억과 추모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제1항에 따른 기억과 추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추모공원·추모기념관·조형물·상징물·봉안시설 등을 포함한 추모 관련 시설의 건립 및 조성

2.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활용을 통한 전시·출판·연구

본다.

⑦ 조사위원회는 제18조제3항의 사고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⑧ 조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에 지원조직을 둔다.

⑨ 그 밖에 조사위원회, 조사단 및 지원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기억과 추모) ① -----
피해자 및 안전사고를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하여-----
-----.

② -----

---인정하는-----
-----.

1. -----추모비
등-----

2. 기억과 추모를 위한 관련---
-----관리·전시

· 학술 및 문화사업 및 국제
협력사업

3. 현장의 보존·관리·조사·
홍보 및 연구사업

4. 교육·체험관의 설립

5.·6. (생략)

③ 국가등은 제2항에 따른 사
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
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억과
추모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 등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국가등은 제2항에 따른 사
업을 시행하는 경우 유가족을
비롯한 안전사고 피해자 등 이
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한
위원회 구성 등 절차를 마련하
여야 한다.

⑤ 국가등은 제3항의 재단 등
단체에 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
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하여야 한다.

및 조사·연구

3. 기억과 추모를 위한 관련 자
료 및 기념사업에 관한 홍보
· 교육과 이에 관한 각종 간
행물의 제작·배포

4. 안전사고 예방 교육·훈련시
설의 설치·운영

5.·6. (원안과 같음)

③ -----사
업(이하 이 조에서 “추모사업”
이라 한다)의 원활한-----
위하여 추모사업의-----
피해자 및 안전사고에 대한 기
억-----비영리 기
관·-----.

④ -----추모사업을-----
-----추모사업의 효율적
추진과-----이해관계자
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필요한
-----.

⑤ -----제3항에 따라 추
모사업을 위탁한 비영리 기관
·-----추모사업의 수행에--
-----비용의 전부-----일부

⑥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에 필요한 지원조직의 설치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공동체 회복) ① 국가등은 안전사고로 영향을 받은 지역 사회·공동체의 심리적 안정·동질성 유지·공동체 정신 및 신뢰의 회복·재난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갈등의 조정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② 국가등은 공동체 회복을 위

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추모사업에-----
---사항은-----
-----.

제21조(공동체 회복) ① -----
-----피해
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

② 국가등은 제1항에 따른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및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
· 시행
2. 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
3. 그 밖에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2항에 따른 사

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공동체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 등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등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유가족을 비롯한 안전사고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한 위원회 구성 등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등은 제2항에 따른 재단 등 단체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에 필요한 지원조직의 설치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안전약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국가등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약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피계획과 지원대책을

업(이하 이 조에서 “공동체사업”이라 한다)-----

-----공동체사업의 전부-----

-----공동체-----

-----비영리 기관 . -----

-----.

④ -----공동체사업을-----

-----공동체사업의 효율

적 추진과-----및 피해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

렴을 위하여 필요한-----

-----.

⑤ -----제3항에 따라 공

동체사업을 위탁한 비영리 기

관 . -----공동체사업의 수행

에-----비용의 전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

한 사항 외에 공동체사업에---

-----사항은-----

제22조(안전약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

-----관계 법령에 따라 대피

수립·시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지원체계의 확립 등) ①

국가등은 안전약자와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안전약자와 피해자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 안전약자와 피해자의 지원을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확보할 것
2. 안전약자와 피해자의 지원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할 것

제23조(피해자 정보 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피해자 및 안전약자에 대한 지원, 안전사고 관련 정보의 공개 등 관련 업무에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피해자 및 안전약자에 관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

계획-----
-----.

제23조(지원체계의 확립 등) ①

-----피해자와 안전약자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
-----.

② -----어
느 하나의 요건-----피해
자와 안전약자-----
-----.

1. 피해자와 안전약자의 지원을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확보할 것
2. 피해자와 안전약자-----
-----운영할-----

제24조(피해자 정보 누설의 금지)

-----피해자-----

-----피해자-----

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자
2. 제2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5조(벌칙) 제24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5천만원-----.

<삭 제>

<삭 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11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8조 및 제19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사고조사는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안전사고부터 실시한다.

생명안전기본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안전에 관한 모든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안전사고에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 안전사고 피해자의 권리 등을 규정함과 아울러 안전사고의 발생 원인 및 국가에 의한 안전사고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의 보장, 안전영향 분석·평가제도 등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로부터 모든 국민이 자신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사회를 건설·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안전사고의 예방·대비·대응·복구의 과정에서 모든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인 권리를 차별 없이 보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안전”이란 안전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위협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2. “안전사고”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

3. “피해자”란 안전사고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안전사고를 목격한 피해자의 경우에는 안전사고를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4. “안전약자”란 신체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인 이유 등으로 안전사고에 취약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나. 65세 이상의 노인

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

라.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숙인 등

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사. 그 밖에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에 취약한 사람

5. “안전관련기준”이란 사람의 안전과 안전사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안전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을 말한다.

제4조(안전권) ① 모든 국민은 성별·종교·인종·세대·지역·사회적

신분·경제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일상생활과 노동현장 등에서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 권리(이하 “안전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 국가등은 안전권을 보장하는데 있어 대한민국의 영역에 있는 외국인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피해자의 권리) ① 피해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구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피해자는 예방·대비·대응·복구 과정에 대한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받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피해자는 안전사고의 예방·대비·대응·복구 과정에서 각 호를 포함하는 인도적인 처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1. 차별받지 아니하고 혐오로부터 보호받으며 필요한 조력을 받을 권리

2.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3. 사망자의 시신을 인도적으로 인계받을 권리

4. 유품을 인도적으로 인계받을 권리

5. 다른 사람들과 회합하고 필요한 조력을 받을 권리

6. 생활지원·의료지원·심리치료지원·치유휴직 및 재취업지원·고용유지지원·이동지원·주거지원·법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

7. 신속하고 적절한 사고수습을 요구할 권리

8. 사고원인 및 국가등에 의한 안전사고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고 그 조사 과정에 참여를 요구할 권리
9. 배상 및 보상 등 피해자 구제를 받을 권리
10. 기억, 추모, 애도를 받거나 할 권리
11. 추모사업·공동체 회복사업 등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후속 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등 참여할 권리
12.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고 재발방지대책의 수립과정에 의견을 개진하는 등 참여할 권리
13. 그 밖에 「대한민국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인정되는 피해자의 권리

제6조(국가등의 책무) ① 국가등은 모든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할 책무를 지고, 안전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안전 관련 법령,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모든 국민에게 실질적인 참여와 안전에 관한 정보에의 접근을 차별 없이 보장하여야 한다.

③ 국가등은 안전사고의 예방·대비·대응·복구 과정에서 피해자의 조사 요구 및 조사 과정에의 참여 요구에 성실히 응하는 등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약자는 특별히 보호하여야 한다.

④ 국가등은 안전사고의 효율적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하여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등은 사업을 발주하거나 시행하는 경우 안전사고의 예방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⑥ 국가등은 안전과 관련된 계획과 지침 등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국가등은 피해자에 대한 이해 증진과 효율적 소통·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피해자의 권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기업 등의 책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등(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은 안전사고의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등의 안전 관련 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안전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기업등은 안전사고를 예방·대비·대응·복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약자는 특별히 보호하여야 한다.

③ 기업등은 안전사고 발생 및 수습현장을 훼손하거나 안전사고의 원인 및 대응의 적정성 등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안전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생명안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9조(국민생명안전위원회) ① 안전권을 증진하고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건설·확립하기 위한 생명안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이하 “생명안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생명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명존중 안전사회 건설·확립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 및 제10조에 따른 생명안전종합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산업재해, 자연재난, 교통안전, 어린이 안전 대책 및 그 밖의 생명안전 관련 주요 정책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안전권 증진, 피해자 권리의 보장, 안전약자의 특별한 보호와 관련된 제도의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안전사고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관련된 관리체계의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생명존중 안전사회 관련 예산의 투자 방향에 관한 사항
6. 관계 기관 간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7. 생명존중 안전사회 관련 교육 및 홍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안전권 증진과 생명존중 안전사회 건설·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생명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이 생명안전위원회

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생명안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④ 생명안전위원회의 위원은 생명안전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⑥ 제3항에 따른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1명이 공동으로 된다.
- ⑦ 그 밖에 생명안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생명안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안전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 차원의 안전권 보장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생명안전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생명안전종합계획안을 작성하고, 생명안전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생명안전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안전권 보장 목표와 방향
- 2. 안전권 보장을 위한 생명안전 관련 주요 정책의 기본 방향
- 3. 안전권 보장을 위한 법령·제도의 마련, 정비 등 기반 조성에 관

한 사항

4. 피해자의 권리 보장 및 피해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의 협업 및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5. 안전약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에 관한 사항
6. 안전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생명안전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8. 안전사고의 효율적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한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9. 안전권 증진을 위한 자원 조달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10. 안전사고에 대한 독립조사, 기억과 추모 및 공동체 회복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안전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생명안전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생명안전종합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안전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별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생명안전종합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 재정 및 인력 확보 의무) ① 국가등은 안전 관련 사업의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추진을 위하여 요구되는 인력 및 재원을 확보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인력 및 재원의 효과적인 확보를 위한 협의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안전관련기준의 통합적 관리 등

제13조(안전관련기준의 설정 등) ① 국가등은 모든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기준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련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안전관련기준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안전관련기준 및 그 설정 근거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국가등은 안전관련기준의 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관련기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안전관련기준의 분야·범위·평가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안전지수의 공표·안전수준 진단 및 취약성 분석)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관리 역량의 제고를 위하여 시·도별 및 시·군·구별로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수(이하 이 조에서 “안전지수”라 한다)를 개발·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표된 안전지수를 고려하여 시

·도별 및 시·군·구별로 안전수준 진단 및 취약성에 대한 실태조사·분석을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지수의 개발·조사, 제2항에 따른 안전수준 진단 및 취약성에 대한 실태조사·분석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지수의 조사 항목·방법·공표절차, 제2항에 따른 안전수준 진단 및 취약성에 대한 실태조사·분석의 실시 시기·내용·사후관리, 제3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안전영향 분석·평가) 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영향 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사업이 다른 법률에 따라 안전 관련 사전협의 또는 영향평가를 거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안전영향 분석·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안전영향 분석·평가의 대상·방법·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지원의 원칙 등

제16조(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지원의 원칙) ① 국가등은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이 법에서 정하는 각종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을 차별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의 기간과 범위·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③ 국가등은 피해자 및 안전사고가 발생한 피해지역(이하 “피해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국가등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보상 등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구제절차와 피해 입증을 위한 자료 등의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사고에 관한 정보의 제공)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가등 또는 관련 기업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피해자와 관련된 안전사고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안전사고와 관련된 감사원·조사기구 등의 조사 결과와 법원의 판결서

2. 안전사고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국가등 또는 관련 기업등의 명칭
· 소재지 · 안전사고원인 · 재발방지대책 · 피해지원과 회복에 관한
사항
3. 유해 · 위험 물질 취급 및 노출에 관한 정보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보호하거나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18조(안전사고에 대한 독립적 조사 등) ① 국가는 안전사고의 발생
원인과 수습 과정의 적정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전문적
인 조사(이하 “사고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안전사고의 발생 원인과 수습 과정의 적정성을 규명하고,
정책개선 권고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의 업무(이하 “조사업무”라
한다)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안전사
고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사고조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조사위원회의 조사 기간은 안
전사고의 규모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되 신속하게
실시한다.

1.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거나 안전사고의 영향이 사회적
· 경제적으로 광범위한 안전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
사고
2.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여 조사를 요구하는 안전사고. 이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 대상으로 정하는 안전사고. 다만, 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가 개별 법령에 따른 조사기구에서 진행 중인 안전사고는 제외한다.

④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3항에 따른 사고조사
2. 조사보고서의 작성·의결
3. 제7항에 따른 조치결과 점검 및 확인에 관한 사항
4. 사고조사에 필요한 조사·연구
5. 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이를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
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조사대상자, 참고인 및 그 밖의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하여 조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료 또는 물건의 보관

4.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한 사실조회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6. 조사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실지조사

7. 조사대상인 사고조사에 관하여 다른 조사기구의 조사기록, 재판 기록 및 그 밖의 기록의 열람, 등사, 사본의 제출요구 등을 통한 조사

⑥ 국가등은 조사위원회가 발표하는 조사결과 및 정책개선 권고 사항을 존중하고 이행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책개선 권고 사항에 따른 조치계획과 이행방안을 조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조사위원회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하여 그 조치결과를 점검·확인할 수 있다.

제19조(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상임위원은 3명 이내로 한다.

② 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비상임위원은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

람

3. 대학에서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재해·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관련 분야 또는 긴급구조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사고조사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인권 관련 단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7. 수사·정보수집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조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조사위원회의 위원은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3. 정당의 당원

⑥ 조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⑦ 조사위원회는 제18조제3항의 사고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⑧ 조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에 지원조직을 둔다.

⑨ 그 밖에 조사위원회, 조사단 및 지원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기억과 추모) ① 국가등은 피해자 및 안전사고를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제1항에 따른 기억과 추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추모공원·추모기념관·추모비 등 추모 관련 시설의 건립 및 조성
2. 기억과 추모를 위한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3. 기억과 추모를 위한 관련 자료 및 기념사업에 관한 홍보·교육과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배포
4. 안전사고 예방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운영
5. 기념일의 지정
6. 그 밖에 기억과 추모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국가등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이하 이 조에서 “추모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모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해자

및 안전사고에 대한 기억과 추모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국가등은 추모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추모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피해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국가등은 제3항에 따라 추모사업을 위탁한 비영리 기관·단체에 추모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추모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공동체 회복) ① 국가등은 안전사고로 영향을 받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제1항에 따른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및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시행
2. 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
3. 그 밖에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국가등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이하 이 조에서 “공동체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동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

체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국가등은 공동체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동체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국가등은 제3항에 따라 공동체사업을 위탁한 비영리 기관·단체에 공동체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체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안전약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국가등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약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피계획과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지원체계의 확립 등) ① 국가등은 피해자와 안전약자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피해자와 안전약자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 피해자와 안전약자의 지원을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확보할 것

2. 피해자와 안전약자의 지원을 전담하는 기구를 운영할 것

제24조(피해자 정보 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지원,

안전사고 관련 정보의 공개 등 관련 업무에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벌칙) 제24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11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8조 및 제19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사고조사는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안전사고부터 실시한다.